

## 학교법인 새빛학원

### 제255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7인	2인
재적임원	7인	2인
참석임원	6인	0인

1. 일 시 : 2019. 8. 14(수) 11:00 ~ 12:15 (회의소집통보일 : 2019. 8. 7)

2. 장 소 : 안산대학교 대학본관2층 소회의실

####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임승룡(이사장), 박송규, 오성계, 이정민, 박종배,  
김주성.

- 불참 임원 : 김진호, 이승현, 최기호.

- 배석 : 안규철총장

#### 4. 개회선언

임승룡이사장이 성원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선언 후 이정민이사가 개회 기도하다.

#### 5. 회의안건

- 1) 2019학년도 대학교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
- 2) 대학교원 신규임용 건
- 3) 정관 변경 건
- 4) 대학 비품·기자재 불용품 처리 승인 건
- 5) 안산대학교 수정증기(2019~2021) 재정운용계획(안) 승인 건
- 6) 징계의결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건

#### 6. 전 회의록 낭독

문용국사무국장이 지난 254차 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고 임승룡이사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니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이정민이사 동의, 오성계이사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처리하다.

서명 임승룡 박송규 오성계 이정민   
김주성 박종배

## 7. 보 고

### 위원보고

박송규인사위원장이 금일 오전 10시 15분 인사위원회에서 대학 교원 신규 임용과 정관변경에 대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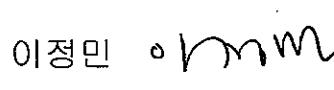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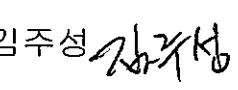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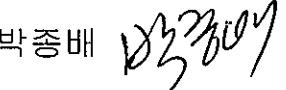
임승룡이사장이 보고사항 접수처리 여부를 물으니 오성계이사가 받기를 동의, 박종배이사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 박수로 보고를 받다.

## 8. 안건의결

### 1) 2019학년도 대학교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건

안종문기획처장이 불임#1 2019학년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추가경정 사유로 등록금회계 전기 결산의 미사용차기이월자금과 당기 미사용전기이월자금액의 예산을 일치시키고 이월자금은 등심위 잉여금 처리 원칙에 따라 학생지원비로 사용하며, 학생취업지원처에 편성되어 있는 교내 장학금을 교육실 학생지원비로 편성하고, 비등록금회계의 예산일치를 위해 증액된 이월자금을 교육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며, 등록금회계 이월자금으로 추가 편성된 학생통학버스 예산액을 감액하고, 8월 31일자 명예퇴직교원 승인에 따라 교원퇴직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며, 기숙사 미사용전기이월자금을 교육 환경개선기금으로 적립하고, 국제교류문화원 인건비로 편성된 근로성격 지출 예산을 교내 장학금으로 변경하며, 평생교육원 안산에이블대학과정 기부금 및 단기수강료 수입 발생에 따라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추가편성하여 등록금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자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 26,571,974,000원 보다 103,362,000원이 증액된 26,675,33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금 지출 예산도 감액 편성하고, 비등록금회계의 수입예산도 당초 20,555,500,000원에서 418,841,000원을 증액하여 20,974,341,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하다.

이에 이사들이 검토 후 박송규이사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니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 이정민이사 재청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여 2019학년도 대학교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된다.

서명 임승룡  박송규  오성계  이정민   
김주성  박종배 

## 2) 대학 교원 신규 임용 건

안규철총장이 불임#2 신규임용 교원 제청사유로 명예퇴직교원에 대한 충원으로 대학의 교원 채용 절차에 따라 추천된 방사선과 강성진(남)에 대한 이력과 주요경력을 설명하였으며 신규임용을 제청하다.

임승룡이사장이 총장이 제청한 교원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이사들에게 물으니 이정민이사가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실무경력도 풍부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니 학생지도에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임용할 것을 동의, 박종배이사 재청 이사 전원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3) 정관 변경 건

박송규인사위원장이 불임#3 정관 변경 건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제4항에 의거 평의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2019년 8월 1일부로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교원에 있는 조교를 별도로 분리하고 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에 의거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정관 별표 정원을 법인, 대학, 유치원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변경한다는 설명에 이사들이 논의 후 김주성이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의한 정관변경으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 이정민이사 재청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 4) 대학 비품 · 기자재 불용품 처리 승인 건

안규철총장이 2019학년도 상반기 내용연수 경과 미사용 물품 불용품 처리 건에 대하여 간호학과 포함 15개 학과 및 부서의 비품 기자재 불용품을 불임과 같이 처리한다는 보고에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박송규이사 동의, 김주성이사 재청 불용품 처리를 승인하기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서명 임승룡 박송규 오성계 이정민   
김주성 박종배

### 5) 안산대학교 수정중기(2019~2021) 재정운용계획 승인 건

안종문기획처장이 첨부된 자료를 토대로 2016년에 계획한 2017~2021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당시와 2019년 현재 우리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당시보다 보수, 관리운영비 증가와 2020년 입학자원의 현격한 감소가 예상되는 바,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보고를 하다.

이에 오성계이사가 입학자원 감소에 대한 대학의 대처 방안과 등록금회계 자금지출 계획에서 지출은 감소하였는데 보수 비율이 증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안종문기획처장이 앞으로 대학평가에 재학률 지표 비중이 높아지기에 모든 교직원의 역량을 모아 재학률 지표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며 보수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자금지출 총액 대비 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지출 감소에 따른 비율 증가로 보수 총액은 현재 금액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다.

이에 이사들이 자료를 검토 후 수정중기 재정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이정민이사 동의, 오성계이사 재청 만장일치 가결하다.

### 6) 징계의결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건

임승룡이사장이 사립학교법 제66조 제3항에 의거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결과가 2019년 8월 7일에 통고되어 임용권자가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을 설명 후 징계위원장인 박송규이사에게 징계의결서 대한 설명을 요청하니 박송규이사가 징계위원회의 경과를 보고한 후 징계 대상자인 ○○○ 교수에 대하여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를 하다.

이에 이사들이 심의 후 2019년 8월 14일부로 해임하기로 하다.

## 9. 폐회

임승룡이사장이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오성계이사가 폐회 동의, 박송규이사 재청 한 후 기도로 12:15 폐회하다.

2019. 8. 14.

서명 임승룡 박송규 오성계 이정민   
김주성 박종배